



도민이 중심
신뢰받는 의회

제41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 6. 11.(화) 10:00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지원 조례안

교 육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검 토 보 고 서

1. 발의자: 유상용 의원 등 7인

2.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

- 발의일자: 2024년 5월 30일
- 회부일자: 2024년 5월 31일

3. 제안 이유

- 최근 들어 온라인게임과 소셜미디어 이용 급증 등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활동량 감소와 기초체력은 저하되고, 정서적으로도 급속한 개인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청소년들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 및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안 제2조)
-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안 제4조)
- 청소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 (안 제6조)
-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7조)

5. 검토 의견

가. 조례 제정 이유

- 대학입시에 치중된 우리의 교육 현실과 함께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자연적 놀이공간의 상대적 축소, 온라인게임 및 소셜미디어 이용 급증 등은 건전한 청소년 여가활동 경험 기회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활동량은 감소하고, 기초체력의 저하와 함께 급속한 개인화 경향 및 심각한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¹⁾으로 지목되기도 함.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인 청소년단체 활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많은 사람과 접하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성 발달과 자아정체감 확립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연구²⁾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음.
-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³⁾ 및 「청소년 기본법시행령」 제2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일컫고 있음.
- 이러한 기준을 충족해 올해 충청북도교육청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단체는 총 14개 단체*이며,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은 8,399명으로 나타나고 있음.

1) '체육 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구창모(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1)

'청소년의 여가활동 유형과 청소년 비행과의 관계': 박준석, 이종경, 안경일(용인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01)

2)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와 자아정체감 및 사회성 발달의 관계': 장세중(한국체육대학교 석사논문, 2006)

3)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충북 도내 청소년단체 참여 현황 】

(단위: 천원, 명)

순	기관명	2023. 6월 말 현황(명)		
		학교	지도자	학생
1	한국스카우트충북연맹	30	6	62
2	한국걸스카우트충북연맹	9	10	196
3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11	13	236
4	한국청소년충북연맹	10	23	947
5	한국해양소년단충북연맹	7	21	131
6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112	273	1,673
7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충북본부	7	12	371
8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52	57	460
9	충북파라미타청소년협회	4	12	416
10	한국4-H충청북도본부	70	121	2,529
11	국제로타리3740지구	27	27	734
12	한국항공우주소년단충북연맹장	12	10	63
13	홍사단충북지부	1	1	18
14	사단법인한국B.B.S충북연맹	88	46	549
15	*세계도덕재무장충북본부	1	1	14
	계		633	8,399

자료출처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 이 같은 수치는 2023년 기준 도내 초, 중, 고교 학생 수 163,258명의 약 5%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참여 학생 규모 역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도내 청소년단체 참여 학생 수 변화 추이 〉

(단위 : 명)

2020. 6월말	2021. 6월말	2022. 6월말	2023. 6월말
26,262	17,451	8,811	8,399

자료출처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 또한, 지난 2018년 7월‘청소년 단체활동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이 개정¹⁾되면서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 대한 가산점 인정이 지난

1) 청소년단체 활동 승진가산점 평정 규정 폐지 (2018. 7. 19. 개정, 2019. 3. 1. 시행)

현행평정점		개정내용		비고
월평정점	상한점	월평정점	상한점	- 2020. 2. 29.까지의 실적만 인정하고 2020. 3. 1.부터 실적은 가산점 부여를 폐지한다.
0.0027	0.16	0.0027	0.16	

2020년 3월 1일부터 폐지¹⁾되고, 충북교육청과 교원노조 간 단체협약²⁾을 통해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를 단위학교 업무분장에서 배제하는 등 청소년단체 활동이 학교 기반의 운영 방식에서 지역 단위 청소년단체 활동으로 변화되어 왔고, 학교에서 이뤄지는 청소년단체 활동도 학생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른 참여가 이뤄지도록 권장하고 있음.

○ 이에 충북교육청은 2023년부터 청소년단체에 보조금 형식의 지원 예산 가운데 공모사업 부문을 추가해 지원하고 있음.

【 도내 청소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 】

(단위: 천원, 명)

순	기관명	2021	2022	2023		2024	
		지원사업	지원사업	지원사업	공모사업	지원사업	공모사업
1	한국스카우트충북연맹	3,500	3,500	4,000	26,220	4,000	5,700
2	한국걸스카우트충북연맹	3,500	3,500	4,000	7,400	4,000	8,000
3	한국청소년화랑단연맹	2,500	2,500	3,000		3,000	5,300
4	한국청소년충북연맹	5,500	5,500	6,000	7,200	6,000	5,700
5	한국해양소년단충북연맹	3,000	3,000	3,500	2,980	3,500	8,500
6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25,500	25,500	26,000	5,000	26,000	5,000
7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충북본부	2,500	2,500	3,000		3,000	1,500
8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4,000	4,000	4,500		4,500	3,500
9	충북과라미타청소년협회	3,500	3,500	4,000	5,200	4,000	5,800
10	한국4-H충청북도본부	5,500	5,500	6,000		6,000	6,000
11	국제로타리3740지구	2,500	2,500	3,000		3,000	
12	한국항공우주소년단충북연맹장	2,500	2,500	3,000		3,000	
13	홍사단충북지부	2,500	2,500	3,000		3,000	
14	사단법인한국B.B.S충북연맹	2,500	2,500	3,000	6,000	3,000	5,000
15	*세계도덕재무장충북본부	2,500	2,500	0		0	
	계	71,500	71,500	76,000	60,000	76,000	60,000

* 세계도덕재무장충북본부 운영의 어려움으로 2023년도부터 사업보조금 신청하지 않음
자료출처 :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1)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승진 가산점 관련

- 충북교육청, 2020. 3. 1.부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승진가산점 폐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요구로 인하여 승진가산점을 폐지하였고 현재 일부 교육청(전남, 인천, 경북, 대구, *강원)만 유지
*강원: 2024. 3. 1. 이후 교원 승진가산점 부활

2) 충북교육청-교원단체 단체협약 체결 내용 (2020년)

구 분	협 약 내 용
전 국 교 직 원 노 동 조 합	제13조③ 도교육청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단체 관련 업무는 교사의 공식적인 업무가 아님을 안내한다.
충 북 교 사 노 동 조 합	제12조⑦ 교육청은 청소년단체에 대한 업무를 희망하는 교사에 한하여 담당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업무를 해당 단체로 이관하도록 노력한다.

○ 본 조례안은 청소년단체 운영의 방식 변화와 학생 참여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충청북도교육청이 청소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와 취지가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현재 전국 시도 교육청 가운데 ‘청소년단체’ 지원과 관련해 조례를 제정·시행 중인 곳은 총 10곳임.

【 시도 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

(2024년 05월 기준)

연번	시·도	조례명	제·개정일
1	강원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2023. 08. 04.
2	경기	경기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2020. 05. 19.
3	경북	경상북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04. 13.
4	광주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8. 03. 01.
5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2020. 07. 16.
6	인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2021. 06. 04.
7	전남	전라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2019. 12. 26.
8	전북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11. 10.
9	충남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19. 04. 22.
10	울산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	2021. 07. 01.

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담고 있고,

○ 안 제3조(적용범위)에서 조례안의 적용범위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 까지 함께 규정한 것은 향후 학교교육과 청소년단체의 다양한 활동들을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효과성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 **안 제4조(교육감의 책무)**에서는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¹⁾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과 함께 교육감이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를 권장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음.

○ **안 제6조(지원)**에서는 학생들의 청소년단체 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활동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청소년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제29조²⁾에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협력체계 구축)**에서는 교육감이 청소년단체 활동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5년마다 수립하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제6차 기본계획에서 추진했던 청소년단체 활동 활성화 사업들의 한계와 향후 과제로 ‘**청소년활동과 학교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수요 확보 및 질적 제고**’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반영한 것임.

1) 충북교육청, 매년 ‘청소년단체 활동 운영 계획’을 수립해 단위학교별 청소년단체 활동 운영 등을 위한 기준 제공

2) 「청소년 기본법」 제29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제7차 기본계획의 특징에서도 청소년 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시설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노력을 담은 본 조항은 청소년단체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과 양질의 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사료됨.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3~2027) 】

□ 기본계획의 특징

◆ 다양한 청소년 목소리와 급변하고 있는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과제 발굴 및 강화에 중점

- 디지털 네이티브인 청소년 특성과 정책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청소년 디지털 관련 활동 기반 확대 및 역량 제고를 위한 과제 확대
- 학교 밖, 가정 밖 등 유형별 청소년 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신 소외 대상 발굴 등 정책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지원 과제 추진
- 디지털 매체 유해환경·사이버 폭력, 도박·마약류 문제 등 최근 이슈 되고 있는 유해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과제 발굴
- **청소년 참여활동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참여 역량 강화, 참여기구 간 교류 활성화 등 참여활동 지원체계 강화**
- 청소년정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청소년 시설, 지자체, 교육청 등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

자료출처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2023.2.)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충청북도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과정을 보완·연계할 수 있는 수련활동 등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호연지기를

배우는 동시에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현 정부가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청소년정책 과제로 삼아 문화·체육은 물론 국제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기회 활성화를 비롯해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PBL(Project Based Learning)¹⁾ 방식의 청소년활동 모델 개발·보급 추진과 학교시설을 활용한 청소년활동 확대 등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청소년활동 시설 등의 연계, 협력 추진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우리 충북교육청도 청소년단체 활동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 기회 확대 등에 나서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2023~2027) 】



자료출처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2023.2.)

¹⁾ Project Based Learning (PBL) : 제시된 문제를 학습자가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주도형 학습방식'으로 문제해결 능력, 공동체 협력, 의사소통 능력 등 향상

- 그 밖에, 조례의 조문별 검토에서도 전체적으로 조문 체계와 주요 내용 측면에서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집행부 담당 부서와의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 전체적으로 입법절차를 준수한 타당한 조례 제정이라 판단됨.